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19가합28281(본소), 2020가합24797(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송인혁

피고(반소원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인구, 정혜수

변론 종결 2021. 10. 7.

판결 선고 2021. 10.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11,052/3,064,071,690 지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22,104/3,064,071,690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2. 1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9. 19.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 소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망 E 사이의 2017. 9. 19.자 사인증여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04,733,302/7,569,509,180 지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04,733,302/3,784,754,590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23,475,932/7,569,509,180 지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23,475,932/3,784,754,590 지분에 관하여,

다. 원고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08,380,934/7,569,509,180 지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08,380,934/3,784,754,59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

반 소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7. 24.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F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장녀 원고 A, 차녀 원고 B, 3녀 원고 C, 장남 피고를 두었다. F은 2013. 9. 3. 사망하였고, E은 2018. 8. 28. 사망하였다.

나. E과 F은 생전에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화성시 G 구거 488㎡, H 구거 223㎡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F 공유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E과 F은 피고에게, 1998. 8. 11.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8. 8.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6. 5. 24. 별지 4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생전증여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F이 2013. 9. 3. 사망하자, E과 원고들 및 피고는 2014. 3. 25. 이 사건 생전증여 부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F 공유 부동산(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및 G 구거 488㎡, H 구거 223㎡를 말한다) 중 F의 1/2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F이 단독으로 소유하였던 서울 강북구 I 대 260㎡ 및 그 지상 건물은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31. 이 사건 생전증여 부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F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도 같은 날 위 I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G 구거 488㎡, H 구거 223㎡는 E과 피고가 각 1/2씩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 중 G, H 각 구거는 2015. 2. 10. 국가에 수용되었다.

마. 그 후 E은 원고들 및 피고와 재산분배에 관한 논의와 설득을 진행하다가 2017. 9.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E의 1/2 지분과 E이 거주하고 있던 E 단독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와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효력은 E 사망 시 발생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라고 한다)에 각자 기명날인하였다(위 사인증여된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이라고 한다).

바.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8.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있었으며, 각 상속비율은 1/4이다.

사.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면적 정정과 분할 등을 거쳐 별지 1,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고, 이 중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5 내지 7 부동산은 2019. 6. 5. 국가에, 순번 1 내지 4 부동산은 2019. 11. 12. 화성시에 각 수용되었다. 따라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수용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아.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바람에 위 각 수용 당시에도 별지 1,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1/2이 피고 명의로, 나머지 1/2이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1/2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각 229,114,775원(망인 지분 1/2 × 법정상속분 1/4)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19호증, 을 제21호증 내지 을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들은 2017. 9. 19.자 사인증여계약서(을 제4호증)가 피고에 의해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가) 주위적 반소청구

망인은 2017. 7. 24. 원고들 및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망인이 사망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말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서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미 수용된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른 지분, 즉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 망인 소유 1/2 × 상속비율 1/4)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7. 24.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반소청구

설령 2017. 7. 24.자 사인증여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7. 9. 19.자 사인증여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9. 19.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주위적 본소청구) 가) 망인은 2017.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설령 망인이 2017.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을 사인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인증여는 2018. 7. 30. 망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제되었다.

나) 또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2017. 9. 19.자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은 그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2017. 7. 24.자 사인증여의 효력에 대한 판단

2017. 7. 24.자 녹취록(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7. 7. 24.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사후 재산분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피고에게 망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들었던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을 피고에게 사인증여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 2017. 9. 19.자 사인증여의 효력에 대한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2) 망인을 증여자, 피고를 수증자로 하여 '망인이 사망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7. 9. 19.자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여기에 날인된 망인의 인영이 망인 인감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3)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북세무서에 대한 2020. 6. 23.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2021. 2. 24.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인감을 소지하게 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의 자녀들인 J, K, L와 피고의 처 M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 중 별지 1,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8 지분을 유증받았다는 취지로 상속세를 최초 신고한 사실,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곧바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동 주민센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에는 그 작성일자 하루 전인 2017. 9. 18. 망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가 망인의 위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취득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주었다고 추단되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가 사인증여계약서를 2017. 9. 19.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망인의 처 F은 2013. 9. 3.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피고는 F의 사망 이후 망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생전증여 부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F 공유 부동산 중 F이 소유하였던 1/2 지분을 이미 상속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7. 7. 24. 원고들 및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생전 재산 분배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을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와 달리 피고의 처와 자녀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 중 별지 1,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8 지분을 유증받은 것으로 상속세를 최초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처와 자녀들 3인이 망인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각 1/8 지분씩 유증받게 되면 결국 피고 측에서 망인이 소유하였던 위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모두 유증받게 되는 결과($1/8 \times 4 = 1/2$)가 되고, 이는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에 따른 것과 결과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원고들과 피고 모두의 세무대리인이었던 세무사 O, P은 과세관청인 성북세무서 등에 사인증여계약서, 유언장 등의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위 세무사들은 원고들과 피고 모두의 세무대리인이었다는 점에서 사실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위 세무대리인들이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아 이와 다소 다른 내용으로 상속세를 최초 신고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상속세 최초 신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와 다소 다른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와 다른 내용인 망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그 외에 원고들은, 망인 사망 직후인 2018. 9. 1. 피고가 '유서가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를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가 망인 사망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⑤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를 보면 분할 전인 2017. 9월경의 토지 면적대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에 면적 정정된 경우도 정정 전의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망인은 2017. 7. 24.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7. 9. 19.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인증여받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 각 1/4인 각 1/8 지분(= 망인 소유 1/2 × 상속비율 1/4)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9. 19.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는 망인의 생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생전증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2017. 9. 19.자 사인증여에 따라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는 등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재산은 ㉠ 망인이 피고에게 사인증여·생전증여한 재산 합계 6,963,260,399원(이 사건 F 공유 부동산 중 F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1/2 지분은 실제로는 망인이 F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므로, 이 사건 F 공유 부동산은 망인이 소유하였던 1/2 지분뿐만 아니라 F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었던 1/2 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망인이 원고들에게 생전증여한 재산 합계 39,913,318원(원고 A 20,767,860원, 원고 B 2,025,230원, 원고 C 17,120,228원) ㉢ 기타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합계 2,508,470,412원, ㉣ 상속채무액 509,305,994원으로서, 합계 9,002,338,135원(= ㉠ + ㉡ + ㉢ - ㉣)에 달한다.

그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1/8(= 원고들 상속비율 1/4 × 유류분 비율 1/2)에 상당하는 가액은 각 1,125,292,266원(= 9,002,338,135원 × 1/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여기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인 499,791,104원{= (㉢ - ㉣) × 원고들 상속비율 1/4}과 원고들에 대한 각 생전증여액을 공제하면,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604,733,302원(= 유류분 비율 상당액 1,125,292,266원 - 순상속분액 499,791,104원 - 생전증여액 20,767,860원), 원고 B의 경우 623,475,932원(= 1,125,292,266원 - 499,791,104원 - 생전증여액 2,025,230원), 원고 C의 경우

608,380,934원(= 1,125,292,266원 - 499,791,104원 - 생전증여액 17,120,228원)이다.

③ 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사인증여한 재산의 유류분 원물반환으로서,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04,733,302/7,569,509,180 지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04,733,302/3,784,754,590 지분, 원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23,475,932/7,569,509,180 지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23,475,932/3,784,754,590 지분, 원고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08,380,934/7,569,509,180 지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08,380,934/3,784,754,59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의 생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생전증여 부동산 중 망인이 소유하였던 1/2 지분 등을 증여받았고, 2017. 9. 19.자 사인증여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민법 제1112조, 제1113조에 따르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4)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참조).

나)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사인증여·생전증여한 재산

(1) 사인증여한 재산

(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을 사인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²⁾은 아래 표 중 '상속개시 당시 가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1 목록
1
2
3
4
5
6

별지 1 목록
7
8
9
10
11
12
13
14
15
16
별지 2 목록
17
18
별지 5 목록(상속개시 이후 수용된 토지들)
19
20
21
22
23
24
25
합계 : 3,064,071,690원

(나) 원고들은, 상속개시 당시 서울 성북구 AG 대 325m²의 가액은 2018년 개별공시지가인 1,521,000,000원(= 325m² × m²당 공시지가 468만원)이고, 그 지상 건물 중 주택 부분의 가액은 158,335,000원{= 대지의 가격까지 포함된 2018년 개별주택가격 682,000,000원 - 주택 부분 대지면적 107.75m²에 해당하는 2018년 개별공시지가 523,665,000원(= 107.75m² × m²당 공시지가 486만원3) }}이며, 위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의 가액은 건물 기준시가인 699,627,240원이므로, 결국 서울 성북구 A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가액 합계는 2,378,962,240원(= 1,521,000,000원 +

158,335,000원 + 699,627,24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6항,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7조 등 참조), 서울 성북구 AG 대 325m² 지상에는 주택 등 건물이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을 과대평가할 여지가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 AG 토지 지상 건물 중 주택 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개별주택가격은 682,000,000원이고, 위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건물 기준시가는 699,627,2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개별주택가격에는 서울 성북구 AG 토지의 가액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의 주장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고, 관할 세무관청인 성북세무서장도 주택 부분 개별주택가격에 위 토지의 가격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에서 원고들 및 피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 성북구 AG 대 325m² 및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인 위 주택 부분의 개별주택가격과 위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건물 기준시가를 더한 1,381,627,240원(= 682,000,000원 + 699,627,24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생전증여한 재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생전 피고에게 이 사건 생전증여 부동산 중 망인이 소유하였던 1/2 지분을 비롯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재산을 증여한 사실, 위 각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아래 표 중 '상속개시 당시 가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4 목록
1
2
3
4
5
6
7

별지 4 목록
8
9
10
기타
11
12
13
합계: 810,788,709원

(3) 배척 부분

원고들은, F의 사망 이후 이 사건 F 공유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망인이 단독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 공유 부동산 중 F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1/2 지분은 실제로는 망인이 F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므로, 이 사건 F 공유 부동산은 망인이 소유하였던 1/2 지분뿐만 아니라 F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었던 1/2 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단독으로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과 F이 부부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이 F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바로 망인이 F에게 위 각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F에게 이 사건 F 공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사인증여·생전증여한 재산의 액수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사인증여·생전증여한 재산의 액수는 합계 3,874,860,399원(= 사인증여액 3,064,071,690원 + 생전증여액 810,788,709원)이다.

다)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 원고 A에게 현금 20,767,860원, 원고

B에게 2,025,230원, 원고 C에게 17,120,228원, 원고 A의 딸인 AY에게 31,100,000원, 원고 A의 딸인 AZ에게 46,110,000원을 각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망인이 AY, AZ에게 합계 77,210,000원(= 31,100,000원 + 46,110,000원)을 증여한 것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AY, AZ의 학비 명목으로 이를 증여한 점, AZ, AY에 대한 각 현금 증여액수가 원고들에 대한 현금 증여액수보다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질적으로 망인이 AY, AZ의 어머니인 원고 A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생전 원고들에게 117,123,318원{= 원고 A에 대한 증여액 97,977,860원(= 20,767,860원 + 77,210,000원) + 원고 B에 대한 증여액 2,025,230원 + 원고 C에 대한 증여액 17,120,228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다.4) 라) 기타 적극적 상속재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예금채권 등 40,333,238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각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아래 표 중 '상속개시 당시 가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성북구 BA 대 138.2m ²	1,216,518,320
2	서울 성북구 BA 지상 건물	
3	서울 강북구 BB 대 215m ²	1,116,738,854
4	서울 강북구 BB 지상 건물	
5	서울 강북구 BC 대 30m ²	134,880,000
6	예금채권 등	40,333,238
합계 : 2,508,470,412원		

마) 상속채무액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카드대금 등으로 합계 509,305,99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소결론

위 인정사실과 판단을 종합하면, 망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5,991,148,135원(= 피고에 대한 사인증여·생전증여액 3,874,860,399원 + 원고들에 대한 생전증여액 117,123,318원 + 기타 적극적 상속재산액 2,508,470,412원 - 상속채무액 509,305,994원)이라고 볼 것이다.

5)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B)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상속비율이 1/4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유류분 비율은 그 1/2인 1/8이다.

6) 특별수익액(C) 앞서 본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액과 같이, 원고 A의 특별수익액은 97,977,860원, 원고 B는 2,025,230원, 원고 C는 17,120,228원이다.

7) 순상속분액(D) 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이하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한다)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이때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

한편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나) 위 산정방법에 따른 간주상속재산, 원고들과 피고의 법정상속분액, 특별수익과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6,500,454,129원 (기타 적극적 상속재산 2,508,470,412원 + 원고들 특별수익 117,123,318원 + 피고 특별수익 3,874,860,399원)	1/4	1,625,113,532원	97,977,860원	1,527,135,672원
원고 B	2,025,230원	1,623,088,302원			
원고 C	17,120,228원	1,607,993,304원			
피고	3,874,860,399원	-2,249,746,867원			

피고는 초과특별수익자이고, 그 초과특별수익분은 2,249,746,867원이므로, 원고들이 위 초과특별수익분을 피고를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1,527,135,672원	2,249,746,867원	1/3	749,915,622원	777,220,050원
원고 B	1,623,088,302원	873,172,680원			
원고 C	1,607,993,304원	858,077,682원			

다) 한편 망인의 상속채무는 카드대금 채무 등으로서 가분채무이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속채무 부담액은 초과특별수익자인 피고를 포함하여 상속채무 509,305,994원을 상속비율로 안분한 각

127,326,498원(= 509,305,994원 × 상속비율 1/4)이다.

라) 따라서 원고 A의 순상속분액은 649,893,552원(= 777,220,050원 - 127,326,498원), 원고 B은 745,846,182원(= 873,172,680원 - 127,326,498원), 원고 C은 730,751,184원(= 858,077,682원 - 127,326,498원)이다.

8)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22,104원이라고 할 것이다.

A	748,893,516원 (= 5,991,148,135원 × 유류분비율 1/8)	97,977,860원	649,893,552원	1,022,104원
B	2,025,230원	745,846,182원	1,022,104원	
C	17,120,228원	730,751,184원	1,022,104원	

9) 원상회복의 방법 가)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의 통상적인 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사인증여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은 유류분의 원물반환으로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명한다. 그리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사인증여받은 재산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여야 할 각 사인증여 재산의 지분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 피고에 대한 전체 사인증여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11,052/3,064,071,690(= 망인의 지분 1/2 ×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 1,022,104원 ÷ 피고에 대한 사인증여 재산액 3,064,071,690원) 지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22,104/3,064,071,690(= 1,022,104원 ÷ 3,064,071,690원)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인증여는 2017. 7. 24. 또는 2017. 9. 19.에 있었고 망인은 2018. 8. 24.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각 1년이 지난 2019. 12. 2.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1년여가 지난 2019. 7. 26.에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2019. 7. 26. 이전에 이 사건 사인증여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19. 7. 26.에야 이 사건 사인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9. 12. 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망인 사망 이후 수용되면서 원고들이 각 219,744,776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고,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인증여의 대상으로서 위 수용보상금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수용보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위 채권과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민법 제49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유류분의 원물반환을 명하는 이상, 피고가 금전채권인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초한 상계로서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광섭

판사하석찬

판사권원명

별지

1)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취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소장에서부터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설회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2) 이하 부동산 가액은 망인이 사망한 연도인 2018년 단위별 개별공시지가 등에 각 부동산의 면적 및

망인의 지분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3) 468만원의 오기로 보이나,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

4)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F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원고들이 부담하게 된 상속세를 원고들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그 상속세 상당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상속세 상당액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하였으므로(2021. 8. 18.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피고가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원고들과 피고가 부담하게 된 위 상속세를 모두 대신 납부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F의 사망으로 원고들보다 다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망인이 대신 납부하여 준 피고의 상속세액은 113,179,933원으로 원고들의 각 상속세액인 16,411,795원보다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생전 원고들의 위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에게 상속재산 중의 원고들의 몫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상속세 상당액이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